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 공사와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 군민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농어촌폐기물 통합처리 시설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으로 소각기 설치시 매립사용 기간을 연장조치 하므로써 쓰레기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과
-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 조성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소요재원의 확보상황, 그간 집행상황, 향후 자금의 흐름도를 집행부서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득한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토지매입가격 산정기준은
- 답 : 인근 매매실태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추정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만 실 매입시 국가표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입할 것임.
- 문 : 협약서 내용되로 하면 200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 답 : 토지소유자(고성환경 대표 박희갑)의 과다한 은행부채 및 IMF한파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로 전매(공매) 등으로 협약서 파기가 우려됨.
- 문 :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 부지매입액 중 기채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무슨 자원인지
- 답 : 기채 10억원 외 나머지 재원은 군예산으로 집행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6. 2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